행신 2차 중흥 S-클래스 | 타운하우스 | 입주자 모집공고

■ 본 주택은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방침에 따라 인터넷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청약통장 가입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인인증서를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은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으로 최초 계약기능일로부터 10년간 분양권 전매 및 매매가 제한(정부의 2008.8.21 대책 에 따라 관련법령 개정시 변경될 수 있음)되며, 상기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당첨자로 전산관리되며,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10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으며, 청약통장 1순위자 중 2주택 이상을 소유하신 [청약자본인, 배우자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세대원 전원 포함)및 그 세대원 전원포함]분은 1순위 청약이 불가 (2순위로 청약가능)합니다.
■ 2007.9.1 이후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되는 민영주택으로 청약가점제도가 적용되며,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도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하오니 청약신청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은 정부에서 출자한 대한주택보증(주)에서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로써 안심하고 분양받으셔도 됩니다.

◎ 인터넷 청약안내 [건설교통부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내 인터넷 청약 등의 시행지시] 2006.11.27) 에 의거
• 청약은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며 인터넷 청약을 위하여 반드시 가입은행 인터넷뱅킹과 전자공인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자격별 청약접수 일정이 다르므로 반드시 입주자 모집공고문에 의할 것을 권합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하여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 신청하시어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청약신청서비스 안내
국민은행 및 금융결제원(국민은행을 제외한 은행)에서는 청약 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하여 은행 영업점 방문없이 간편하고 편리하게 청약신청 관련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인터넷 청약서비스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니 많이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은행(www.kbstar.com)및 금융결제원(www.apt2you.com)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청약 가상 체험관"을 활용하시기 바람]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고양시 주택과 – 제26240호(2008. 11.14)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행신2택지개발지구 D-4BL
■ 대지면적 : 11,655.10㎡
■ 공급위치 : 지하 2층, 지상 4층 4개동 102세대(특별공급 13세대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

(단위 : ㎡, 천원)

구분	아파트 코드	주택 관리 번호	주택형	세대별 개별면적					세대별 대지지분(㎡)	공급세대	최고층수	해당 동 – 호	층별	총 분양금액			계약금	중도금				잔금
				세대별 공급면적			기타공용면적(지하주차장 포함)	계						대지비	건축비	총계	계약시(10%)	1차(15%) 09.02.05	2차(15%) 09.04.06	3차(15%) 09.06.05	4차(15%) 09.09.04	입주시(30%)
				전 용	주거공용	소 계																
민영주택	22098-01	2008001005 (01)	109.3462 (A)	84.9805	24.3657	109.3462	67.9240	177.2702	114.2660	87	4	101~1~3, 5~7 102~2~3, 5~7 10~11 103~1~3, 5~7 104~2~3, 5	1층	187,345	195,855	383,200	38,300	57,400	57,400	57,400	57,400	115,300
													2~3층	187,345	205,855	393,200	39,300	58,900	58,900	58,900	58,900	118,300
													4층	187,345	225,855	413,200	41,300	61,900	61,900	61,900	61,900	124,300
	22098-02	2008001005 (02)	110.1948 (B)	84.9402	25.2546	110.1948	67.8916	178.0864	114.2123	4	4	102~9	1층	187,257	195,943	383,200	38,300	57,400	57,400	57,400	57,400	115,300
													2~3층	187,257	205,943	393,200	39,300	58,900	58,900	58,900	58,900	118,300
													4층	187,257	225,943	413,200	41,300	61,900	61,900	61,900	61,900	124,300
	22098-03	2008001005 (03)	109.5031 (C)	84.9954	24.5077	109.5031	67.9358	177.4389	114.2866	4	4	102~8	1층	187,379	195,821	383,200	38,300	57,400	57,400	57,400	57,400	115,300
													2~3층	187,379	205,821	393,200	39,300	58,900	58,900	58,900	58,900	118,300
													4층	187,379	225,821	413,200	41,300	61,900	61,900	61,900	61,900	124,300
	22098-04	2008001005 (04)	110.1501 (D)	84.9799	25.1702	110.1501	67.9234	178.0735	114.2656	3	4	102~1	2~3층	187,345	205,855	393,200	39,300	58,900	58,900	58,900	58,900	118,300
													4층	187,345	225,855	413,200	41,300	61,900	61,900	61,900	61,900	124,300
	22098-05	2008001005 (05)	109.3512 (E)	84.9991	24.3521	109.3512	67.9387	177.2899	114.2914	4	4	104~1	1층	187,387	195,813	383,200	38,300	57,400	57,400	57,400	57,400	115,300
													2~3층	187,387	205,813	393,200	39,300	58,900	58,900	58,900	58,900	118,300
													4층	187,387	225,813	413,200	41,300	61,900	61,900	61,900	61,900	124,300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대구모 택지개발지구에서의 입주자 선정 등에 대한 특례)에 의거 공급주택의 30% 범위 안에서 입주자 모집일 현재 고양시 주택건설지역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자에게 우선공급함. – 상기 주택형별 공급금액은 주택법 제38조의 2의 규정에 따라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의 총 금액을 기준으로 주택형별, 층별로 차등을 두어 당시가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임. – 고양시는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2008. 11.07)되어, 당분간정비몰(LTV)을 적용받으며, 총부채상환비율(DTI)은 적용되지 아니함 – 당사는 입주자들의 편이를 위하여 중도금에 대한 대출금의 대출이자는 이자후불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대출 미선정자 또는 본인의 부적격사유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됨시 상기 납부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 함.(미납부시에는 연체료가 부과됨니다.) 또한 대출금을 초과하는 중도금에 대하여는 회사가 지정한 공급대금 납부 계좌에 본인이 일괄 현금 납부하여야 함. – 중도금에 대한 이자후불제의 대출이자는 입주지정일 전일까지 회사가 대납하고 대납된 중도금에 대한 이자는 잔금일에 잔금 및 대납된 대출이자와 함께 회사가 지정한 공급대금 납부계좌에 일괄 현금 납부하여야 함. – 상기 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공히 소유권 이전등기 비용, 등록세, 취득세가 미포함 되어 있음. – 필로티가 있는 동은 필로티 공간을 1층으로 적용하여 총, 호수를 산정하였으며, 이를 기준으로 층별 분양가를 산정함. – 상기 세대당 계약면적에는 지하주차장 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 주택형별 지하주차장에 대한 금액이 상기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음. – 중도금은 당해 주택이 건축공정이 전체 공사비부지매입비 제외)의 50% 이상 투입되고 동별 건축공정이 30% 이상인 때를 기준으로 전후 각 2회 이상 분할하여 받으며, 중도금납부 기준공정시점 이후 납입 일자는 감리자의 건축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음. – 잔금은 사용검사일을 기준으로 받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 규정에 의거 납부하여야 하며, 임시사용승인을 얻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을 입주일에 납부하고 나머지는 사용검사일 기준으로 납부하여야 함. – 상기 세대별 대지지분은 주택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입주시 지적 정리에 따라 대지면적 확정시 부득이한 사유로 면적증감이 있을 수 있음. – 사업주체가 장래에 대한주택보증(주) 또는 대한주택보증(주)가 지정하는 자에게 주택건설 사업부지상공개발을 포함한다를 선하는 경우는 입주 예정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봄 – 청약 신청시 청약자의 청약자격에 대해 확인검증(이) 청약자가 주택공급신청서에 기재한 사항만으로 청약접수를 받으므로 청약신청을 하고자 하는 분께는 본인의 청약자격청약통장가입일, 제당첨조, 세대주 여부, 가주거사실 등을 사전에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청약하시기 바라며, 청약자의 착오 및 기재오류 등에 따라 부적격으로 판정될 경우 가입한 청약통장의 재사용은 불가하며, 계약체결 불가에 따른 책임 또한 당사에서 지지 않으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접수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에 한하여 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 2건 이상 신청시 청약 모두를 무효처리함. – 당 사업지 남측에 경의선 철로가 인접하고 있어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향후 KDX가 환경영향평가에 의해 사업지 남측의 택지개발지구 경계에 방음시설이 설치될 예정으로 방음시설의 높이 및 재질 디자인 등은 추후 확정될 예정임.

■ 신청자격

1) 특별공급(3자녀, 국가유공자 등)
– 신청방법 : 특별공급 신청자가 당사 견본주택 방문신청
– 접수일시 및 장소 : 2008.11.18(화)10:00~12:00) / 당사 견본주택
– 동 · 호수 추첨일시 및 장소 : 2008.11.18(화)14:00 ~ / 당사 견본주택
– 계약체결일 : 각 순위 정당 당첨자 계약 체결일날짜
– 특별공급에 신청하여 당첨된 자는 일반 공급신청이 불가하며 특별공급 신청 미달시 잔여물량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함
– 공급 대상자 선정
· 신청자상 : 각 특별공급 요건을 갖춘 자 중 특별공급을 희망하는 자
· 공급대상 세대수

주택형(㎡)	109.3462(A)		110.1948(B)		109.5031(C)		110.1501(D)		109.3512(E)		합계	
특별공급	3자녀	국가유공자	3자녀	국가유공자	3자녀	국가유공자	3자녀	국가유공자	3자녀	국가유공자	3자녀	국가유공자
공급세대수	3	10	0	0	0	0	0	0	0	0	3	10
경기도	2	5	0	0	0	0	0	0	0	0	2	5
서울시	1	4	0	0	0	0	0	0	0	0	1	4
인천시	0	1	0	0	0	0	0	0	0	0	0	1

· 주택형별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는 공급세대수, 배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해당호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음 · 주택형별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50%를 경기도 거주자에게 공급하며, 나머지는 인구 비율등계정 통계청보 시스템의 2006년도 내국인 인구통계에 따라 서울시 거주자에게 40%, 인천시 거주자에게 10%를 각각 공급함

가) 3자녀 특별공급
– 3자녀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6항)에 의거한 규정해당 주택형 109.3462㎡, 3세대 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6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08.11.14)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지역에 거주하면서 만20세 미만의 직계자녀 3명 이상을 둔 무주택 세대주 (세대주를 포함하여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인 세대주)에게 건설량의 3% 범위 내에서 특별공급함(단 60세 이상의 직계존속 또는 직계존비속을 부양하는 호주 승계권자는 세대주가 아니어도 세대주로 간주함) – 입주자 선정방법 : 배점표에 의한 점수 순에 따라 선정 – 3자녀 특별공급신청자 본인과 그 세대원 및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자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인 경우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음
– 3자녀 특별공급 대상자 구비서류 (※ 구비서류는 상기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제출)

구 분		구비서류
본인 신청시 (배우자 포함)	공통	• 특별공급신청서 및 배정기준표당첨 견본주택에 비치 및 각 시 · 군 · 구 홈페이지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무주택 및 당해 시 · 도 거주기간 등의 기준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임)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 입증서류(건물 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 기타 무주택입증 입증하는 서류 등) • 주민등록등본 1통(본인의 주민등록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배우자 주민등록등본 추가 제출) • 주민등록초본 1통(본인이 인정받고자 하는 거주기간 또는 세대주 기간이 주민등록등본만으로 입증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 미혼장 직계존속의 주민등록초본 1통(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 한함) • 가족관계증서 1통(이혼 해당자에 한함) – 현행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의 주민등록등본 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 이혼 · 이별 · 사별 · 배우자의 분리세대 등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등본 기준으로 배우자 유무확인이 불가능한 자 • 무주택 서약서접수대장 비치 • 주민등록 또는 운전면허증 지참 • 인감도장 • 인감증명서용도 : 주택공급신청용) 1통
제3자 대리신청시 추가사항		• 본인 또는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직계 존 · 비속 포함)로 간주하여 상기 구비사항 외에 아래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용도 : 주택공급신청용 위임용) 1통 • 청약자의 인감도장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당사 견본주택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제외동포는 국내거소 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2005.7.1 주민등록법시행규칙 개정으로 주민등록등본 · 초본 발급시 세대주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기간 산정, 배우자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 받으시기 바람

나) 기타 특별공급(국가유공자 등)
– 특별공급(국가유공자 등)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0조 2항 2호에 의거한 규정해당 주택형 109.3462㎡, 10세대 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0조 2항 2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모집공고일(2008.11.14) 현재 관련단체 기관장의 추천 또는 인증을 받은 재무주택 세대주(에게 건설임의 10% 범위 내에서 특별공급함.
– 특별공급(국가유공자 등) 대상자 구비서류 (※ 구비서류는 상기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제출)

구 분		구비사항
본인 신청시 (배우자 포함)	공통	• 특별공급신청서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 입증서류(건물 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 기타 무주택입증 입증하는 서류 등) • 주민등록등본 1통 • 주민등록초본 1통(주소이전, 세대주 성명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표시) • 해당기관장의 추천서 및 인정세장해인 인증증명서 등) • 무주택 서약서접수대장 비치)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지참 • 인감도장 • 인감증명서용도 : 주택공급신청용) 1통
제3자 대리신청시 추가사항		• 본인 또는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 (직계 존 · 비속 포함)로 간주하여 상기 구비사항 외에 아래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용도 : 주택공급신청용 위임용) 1통 – 청약자의 인감도장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당사 견본주택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제외동포는 국내거소 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2005.7.1 주민등록법시행규칙 개정으로 주민등록등본 · 초본 발급시 세대주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기간 산정, 배우자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 받으시기 바람

2) 일반공급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08.11.14) 현재 고양시 주택건설지역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거나, 수도권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지역에 거주하는 세대주 또는 만20세 이상인 1지구내에 거주하고 있는 제외동포(제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 –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고양시 주택건설지역에 6개월 이만 거주자는 수도권 지역 거주자 자격으로 청약 가능 – 신청자격 및 요건 등 기준은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인 현재이며, 면적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함. – 신청접수는 당첨일이 동일한 입주자모집공고분 전체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청약 모두를 무효 처리함. – 상기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된 청약관련 예금통장은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제외 재사용이 불가하며, 당첨자로 전산 관리됨. – 과거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기당첨된 자 또는 기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재당첨제한 기간이 경과되어야만 1, 2, 3순위 자격으로 청약이 가능함.

■ 순위별 신청자격 및 공급일정

구분	순위	면적구분(전용면적)		청약관련예금	가주구분	접수일자	접수장소 및 시간	당첨자 발표
민영주택	1순위	전용 85㎡ 이하	가점제	•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세대원(무주택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포함), 본인 또는 배우자의 세대원 중 만60세 미만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 · 직계비속인 세대원 전원의 주택소유 사실 포함)에 속한 분 ※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는 가점제 1순위 청약이 불가하며, 청약신청시 지등으로 추첨제 1순위 대상자로 접수됨 ※ 만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은 신청자격 판단시에는 무주택으로 인정하나, 2주택 이상 시 주택을 초과하는 주택수에 대하여 감점은 적용함	고양시 및 수도권	2008.11.19 (수)	• 접수 장소 – 인터넷 ○ 국민은행 (www.kbstar.com) ○ 금융결제원 (www.apt2you.com) • 접수 시간 – 인터넷 청약: 08:30 ~ 18:00	• 일시 : 2008.11.27(목) (15:00) • 장소 : 당사 견본주택 • 아사아 경제신문에 게재 ※ 당첨자 명단은 상기 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셔야하며,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음 (전화문의는 적오 가능성때문에 응답하지않으니 양지하시기 바람)
			추첨제	• 1주택을 소유한 세대원(무주택 본인, 배우자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포함), 본인 또는 배우자의 세대원 중 만60세 미만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 · 직계비속인 세대원 전원의 주택소유사실 포함)에 속한 분				
			공통	• 전용면적 85㎡ 이하 또는 102㎡ 이하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한 분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하고 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분 ※ 청약자격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된 1순위자로서 납입인정금액 범위 내에서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 전일까지 전용면적 85㎡이하 또는 102㎡이하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분 ※ 입주자 자격에 가입한 1순위자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분은 1순위 청약 불가 (2순위로 청약 가능) – 입주자 자격에 가입한 1순위자로서 2주택 이상을 소유청약자 본인, 배우자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전원 포함)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전원의 주택소유 사실을 포함한 세대별 속한 분은 1순위 청약 불가하며 2순위로 청약 가능 (이때 주택 소유에 의한 유의 사항 참조)				
	2순위	전용 85㎡ 이하	가점제 / 추첨제	• 별도 가점제 신청자격 제한 없음 (모든 청약자 가점제로 청약접수) • 청약자는 가점제 / 추첨제 선택 청약이 불가하며, 가점제 낙첨자는 추첨제 대상자로 자동 전환됨				
			공통	• 전용면적 85㎡이하 또는 102㎡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 경과한 분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분 • 청약자격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액을 6회 이상 불입한 2순위자로서 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예치금액 이상인 자로서 최초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해당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분 • 1순위자 중 상기 1순위 청약제한 대상자에 해당되는 분				
	3순위	전 주택형		• 제2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분		2008.11.20 (목)		
						2008.11.21(금)	• 접수 장소 : 국민은행 인터넷 (www.kbstar.com) • 접수 시간 : 08:30~18:00	

※ 청약가점제는 1, 2순위에만 해당되고 청약자는 가점제/추첨제 선택 청약이 불가하며, 가점제 낙첨자는 추첨제 대상자로 자동 전환됨. ※ 청약신청시 은행에서는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 체결시 주민등록 등(초본/가족관계확인서 등 관련서류를 첨구하여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람 ※ 청약신청은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며 노약자, 장애우 등을 제외하고는 은행 창구에서의 청약접수는 불가함 [노약자, 장애우, 인터넷청약자 등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에서 청약 가능함. (창구접수시간 : 09:30~16:30]

■ 청약예금의 예치금액(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조의 3 제4항 관련)

(단위 : 만원)

전용면적 \ 지역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85㎡ 이하	300	250	200
102㎡ 이하	600	400	300

■ 청약관련 예금 변경(전환)시 경과기간 및 요건
– 주택형 변경 요건
• 청약예금(청약부금은 납입인정금액이 지정된 85㎡이하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 납입한 분에 가입하여 가입일(청약자격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전환일, 기예치금액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일로부터 2년 경과시 미다 확수에 관계없이 예치금액 변경이 가능하며, 이 경우 금액은 현행 지정별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변경하여야 함.
– 주택형 변경한 자 신청요건
• 작은 주택규모로 변경한 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신청 가능 • 큰 주택규모로 변경한 자 : 신청일 현재 1년이 경과한 자는 변경 후 평형인 청약신청 가능(단, 1년 미만인 자는 변경 전 평형인 청약신청 가능) • 청약자격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청약신청 가능

■ 신청접수 방법
– 충별, 동별, 호별 구분없이 주택형별, 청약순위별로 고양시 및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지역 거주자를 같은 날짜에 거주지역을 구분하여 접수하고 선순위 신청자접수결과 일반 공급세대수 120%에 미달되는 주택형에 한해 차순위 청약접수를 받음. (단, 3순위까지 청약접수결과 신청자 수가 일반 공급세대수의 120%에 초과하는 경우 더 이상 접수받지 않음) – 본 아파트는 수도권지역에서 공급되는 대규모 택지개발지구로서 청약순위별로 일반공급 세대수의 30%를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2008.11.14) 현재 고양시 주택건설지역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 70%는 수도권 지역 거주자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 및 고양시 6개월 미만 거주자)에게 공급하며 동일 순위 내에서 고양시 6개월 이상 거주자 신청접수 결과 미달 세대는 수도권 지역 거주자에게 공급하고, 수도권 지역 거주자 신청접수 결과 미달시에는 전여물량을 각각 상기 거주지역별 배분비율을 적용, 배분하여 차순위에게 공급함.고양시 6개월 이상 거주자는 30%우선공급에서 낙첨된 경우 나머지 수도권 지역 거주자에게 공급하는 70% 물량에 포함하여 공급함 – 1 · 2순위 : 1순위 청약자 중 가점제 대상자 및 2순위 청약자 전원은 가점제로 청약접수 되며, 가점제 낙첨자는 별도 신청절차 없이 추첨제 대상자로 전환함 – 1순위 청약자 중 추첨제 대상자에 한해 추첨제로 청약접수 함 ※ 청약자는 입주자 선정방법(가점제/추첨제선택)이 불가하며, 청약통장 순위의 청약신청시 입한 주택소유현황 등에 따라 자동부적 접수됨 – 3순위 : 청약신청자 전원 추첨제로 청약접수 함 ※ 각 주택형별로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에 대하여 일반공급 대상 주택수의 75%를 가점제 신청자에게 우선공급하고 25%를 추첨제 신청자에게 공급하며, 가점제 신청자 미달시는 추첨제로 전환하여 공급함 ※ 청약신청시 신청자의 착오에 의하여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신청자에게 있으며 당사 및 청약접수 은 행에서는 책임지지 않음. ※ 일반공급 세대수는 특별공급 접수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가점제 및 주택소유관련 유의사항
◎ 청약가점제 관련 유의사항
– 2007년 9월 1일부터 시행되는 청약 가점제에 의하여 동일 순위1, 2순위간에 경쟁이 있을 경우 일정해일로 배분된 가점제 및 추첨제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함 – 가점제 입주자 선정방법 : 가점점수 / 감점점수의 신청기준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1)에 의한 높은 점수 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함 – 청약가점 항목 및 점수 : 무주택기간(32점, 부양 가족수(35점), 입주자저축(17점) 등 총점 84점) – 가점제에서 탈락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자동으로 추첨제 대상자에 포함하여 입주자를 선정함 – 점수 입력은 청약자 책임당첨자 결정 후에 당첨자의 청약내용에 대한 정확성을 확인하기 필이며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함.
• 가점점수 신청기준표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확인할 서류 등
① 무주택기간	32	1년 미만	2	8년 이상 ~ 9년 미만	18	– 주민등록등본(배우자 분리세대시 배우자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등 – 가족관계증명서(만 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 신고일을 확인)
		1년 이상 ~ 2년 미만	4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2년 이상 ~ 3년 미만	6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3년 이상 ~ 4년 미만	8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7년 이상 ~ 8년 미만	16	15년 이상	32	
② 부양 가족수	35	0명	5	4명	25	– 주민등록등본 · 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1명	10	5명	30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		
③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17	6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 청약통장인터넷 청약시에 자동 계산됨)
		6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②+③ – 감점점수(아래의 "감점 산정기준" 참고)						

• 가점 항목별 적용기준
1. 무주택기간 적용기준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입주자저축 가입자를 포함한 세대원(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직계비속을 말한다)전원이 주택을 소유(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있는 경우를 포함하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2에 따른 소형 · 저가주택 소유자를 무주택자로 보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배우자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60㎡ 이하의 주택으로서 주택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주택 이하 '소형 · 저가주택'이라 한다) 1호 또는 1세대만을 10년 이상 계속 소유소형 · 저가주택을 처분하여 무주택자가 된 경우 그 주택을 계속하여 소유한 기간과 처분 후 계속하여 무 주택자인 기간을 합한 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한 자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조의 2 또는 제12조에 따라 60㎡ 초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자 (배우자를 포함한다)는 그 기간 동안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소형 · 저가주택의 주택가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이하"주택공시가격"이라 한다)중 주택공시가격이 더욱 한다중 입주자모집 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을 주택가격으로 본다. 단, 2007. 8. 31이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도 주택공시 가격을 주택가격으로 본다) 3) 무주택기간은 입주자저축 가입자와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연령이 만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만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가산한다. 이 경우 입주자저축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 (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한다.

2. 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
1)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세대원(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직계비속(미혼인 자녀로 한정하며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미혼 의 손자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으로 한다. 다만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배우자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할한 경우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부양가족으로 본다. 2)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은 입주자저축 가입자(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가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3)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입주자저축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